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5년 5월 23일

나. 회부일자 : 1995년 5월 23일

3. 제안이유

- 『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』의 개정에 따라,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본 조례에 포함하고,
- '95.7.1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원과 '95년도 신규 구입 소방장비와 조달구입 요청한 소방장비의 운전원 및 조작용의 증원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▷ 정원관리기관란에 『의회사무처 정원 57명』을 포함

▷ 정원 : 47명 증원

○ 본청 : 1명(정무직)

○ 직속기관(소방서) : 46명(소방위 2, 장 2, 교 21, 사 21)

- . 청주소방서(6명) : 사다리차 1, 화학차 1
- . 충주소방서(12명) : 대형펌프차 1, 사다리차 1, 조명차 1, 배연차 1
- . 제천소방서(10명) : 굴절사다리차 1, 고가사다리차 1, 배연차 1
- . 영동소방서(12명) : 구난차 1, 굴절사다리차 1, 화학차 1
- . 증평소방서(6명) : 구난차 1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현행 충청북도의 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총수에 있어 본청 893명을 894명으로 1명증원하고, 직속기관의 864명을 910명으로 46명을 증원하며, 정원 관리기관란에 의회사무처 정원 57명을 포함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

주요내용으로는

- 본청의 정원에 있어서 1명 증원은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부직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것이며
 - 직속기관 정원에 있어서 46명이 증원된 것은 신규구입 소방장비의 운용과 관련하여 운전원 및 조작용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소요인력을 증원코자하는 것이며
 - 의회사무처 정원을 본 조례에 삽입코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현 조례에서 제외 되어있던 의회사무처 정원에 대해 본 조례에 포함 명시코자 하는 것으로서
-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하여 그에따른 소요인력의 총원 및 조례조문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승인하여 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6. 첨 부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(안)